[별지서식 제7호의2] (제68조 관련) <신설 2021. 4. 2.>

책임준공 및 공사포기 확약서

1. 본인은 별첨 사업의 시공자로서 책임준공 의무(3의 각호 시공권 양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의 시공을 포기할 수 없음)를 부담하며, 책임준공 의무의 효력은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책임준공이란 공사비 지급지연에도 대상사업의 주택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사용승인필증(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득하여 시행사(또는 수탁자) 명의로 법적 제한 없이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시행사(또는 수탁자)에게 점유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사가 산정한 금액(구상채권원금, 이자, 비용, 기타 발생한 손해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해당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지연 시 실제 상환일 까지 연14퍼센트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첨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지위를 포기하며, 아래 본인의 모든 권리를 귀사에 양도함을 확인합니다.

가.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능력의 상실 또는 사업의 계속 시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귀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다. 사업의 시공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사업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귀사가 판단하는 경우

4. 귀사가 동사업의 시공자를 귀사(귀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명의변경함에 동의하고, 귀사가 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본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가.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나.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주택, 아파트, 상가, 공사관리소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유치권을 포함한다)
라. 미수령공사비에 대한 권리 등 기타 별첨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별첨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인감대조필

양도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 본 확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